

고

시

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059호
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(파주운정3 A6BL)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8-1029호(2019.01.07.)로 승인 고시된 파주운정3 A6BL 공공주택건설사업(국민+영구임대) 계획을 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01월 03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사 업 명 : 파주운정3 A6BL 공공주택 건설사업(국민임대·영구임대)

2. 사업시행자

○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

○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
3. 사업시행지역 :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내 A6BL

4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

가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: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

나. 사유 :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(주택유형 변경 등 실시계획 변경)으로 지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(유형변경 : 국민임대+영구임대 → 공공분양(뉴:홈 나눔형))